
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08. 05 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김선교 · 김기현
김태규 · 김상훈 · 윤한홍
김승수 · 김도읍 · 안철수
윤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, 경제적 · 심리적 · 정서적 어려움, 학교폭력, 경계선 지능,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 · 복지 · 진로 · 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, 학습능력과 인지능력,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, 심리학자,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,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 · 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6

항,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).
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6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고, 필요한 경우 의사, 심리학자, 사회복지학자,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학생 상담 결과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적·언어적 문제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·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지원대상학생의 선정) ① ~ ⑤ (생 략) ⑥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학생 선정을 위하여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 사의 의견,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.	제10조(지원대상학생의 선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하고, 필 요한 경우 의사, 심리학자, 사 회복지학자,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학생 상담 결과 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 다.
⑦ · ⑧ (생 략) 제11조(학생맞춤통합지원 등) ① 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추어 제공 · 관리할 수 있다.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⑦ · ⑧ (현행과 같음) 제11조(학생맞춤통합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2의2. 경계선 지능 학생의 인지</u>

3. ~ 11. (생략) ② ~ ⑥ (생략)	<u>적·언어적 문제로 학습참여</u> <u>및 학교 적응상 어려움을 해</u> <u>소하기 위한 교육·상담 지원</u> <u>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</u> 3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